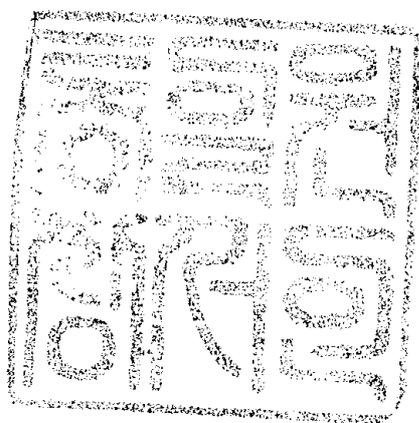


中國 邊境貿易의 現況과 役割



統 一 院

본 자료는 남북경제교류협력 정책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일본의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하는 「アジア經濟」 93년 7월호에 게재된 논문을 번역 발간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당원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유용한 자료로 널리 이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중국에 있어서의 변경무역의 현황과 역할

韓 洪 錫

| | |
|-----------------------------|----|
| I. 서 언 | 3 |
| II. 변경무역의 정의와 특징 | 5 |
| III. 변경무역의 역사와 재개의 배경 | 12 |
| IV. 변경무역의 현황 | 21 |
| V. 변경무역에 대한 평가 | 59 |

I 서 언

최근 중국에 있어서 변경무역의 현저한 발전이 주목을 받고 있다. 「發展邊貿，邊不再窮」(변경무역을 발전시키면 변경지역은 부유하게 된다)라는 말이 이미 많은 변경지역에서 유행어가 되고 있을 정도로 변경무역의 중요성이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다. 작년(1992년) 봄에 중국정부가 표명한 「沿江沿邊開放」(양자강 유역과 변경지역의 개방) 방침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변경지역에서는 변경무역의 확대가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黑河, 綏芬河, 滿洲里, 揮春, 凭詳, 東興鎮, 河口縣, 琿町, 瑞麗, 伊寧, 塔城, 博樂, 二連浩特的 13개 도시가 「변경대외개방도시」로 지정되어 변경무역에 관한 다양한 우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변경무역의 발전 가능성은 이들 변경도시가 갖고 있는 입지적 조건에 달려있고 이러한 입지조건은 이후의 경제발전에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¹⁾

주1) 경제개혁 전까지 중국중앙정부가 외국과의 무역을 독점적으로 행하고 있었던 때에는 외국과 접하고 있는 변경지역이라는 지리적 위치가 그 지역의 경제에 어떠한 이익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오히려 인접국과의 국가관계가 긴장될 때에는 변경지역의 경제는 커다란 악영향을 받았다. 특히 「文革」 때에는 「세계대전 불가피론」의 그릇된 전략 때문에 거의 모든 변경지역에 대한 국가 투자와 건설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변경지역은 중국내에서 비교적 경제가 후진된 지역이 되었다. 따라서 변경지역이 갖고 있는 특유의 입지조건은 개방정책이 실시된 후에 비로소 지역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瞭望」, 評論員 「沿邊開放, 利國利民」 1992년 「瞭望」(1992년 32기)/李春雷, 「打開國門, 邊不再窮」(同誌 1992년 22기) 참조.

중국 대외무역의 절대량에서 보면 현재 변경무역의 규모는 그다지 큰 규모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중국 경제구조하에서는 변경무역이 변경지역의 경제발전에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이 글의 목적은 중국 변경무역의 현황을 살펴 봄으로써 현단계에 있어서 중국 경제구조특징의 일부를 밝히려는 데에 있다. 제Ⅱ절에서는 중국 변경무역의 정의와 특징을 소개하고, 제Ⅲ절에서는 변경 무역의 역사와 재개의 배경을 소개하고, 제Ⅳ절에서는 변경무역의 현황을 살펴 본 후에 마지막으로 변경무역방식의 효율성과 지역경제발전에 있어서의 역할을 검토할 것이다.

II. 변경무역의 정의와 특징

1. 변경무역의 사전적 정의

변경무역은 외국무역의 하나로서 특수한 방식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실시되고 있다. 중국에서의 변경무역은 종종 「변경소액무역」 혹은 「변경바터무역」 이라고도 불리어지지만 실제로 현재 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변경무역을 엄밀히 정의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1989년에 출판된 중국의 권위있는 사전인 「辭海」에서는 변경무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변경무역」이란 「양국의 협의에 따라서 인접한 국경지구(일반적으로 국경에서 15km이내)에서 행하는 소액무역이다. 그것은 주로 양국 변경지역 주민의 생활용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해지는 무역이며 양국은 관세의 감면과 통관수속의 간소화등을 통해서 우대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양국이 변경무역을 하기 위하여 협의에 따라 주어진 우대조치는 양국의 변경무역 이외의 무역에는 적용할 수 없고 제3국에도 그 우대조치를 원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같은 정의나 해석은 지금 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변경무역의 풍부한 내용과 특징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생각된다.

2. 변경무역 정의의 어려움

1984년 12월 15일 중국의 대외경제무역부는 「변경소액무역잠정관리방법」을 공표했다.²⁾ 이것에 따르면 변경무역 방식의 기본적 결정권과 관리권은 외국과 인접하고 있는 각 성(자치구)의 일급 행정관리기관이 갖게 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성(자치구)정부가 그 권리를 차하급의 지방정부에 양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지방정부는 자기들의 실정에 따라서 여러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중국의 변경무역에서는 무역결제에 국제통화를 사용하는 통상적인 수출입 활동에 비하여 중앙정부의 규제가 적어지고 지방정부가 무역방식을 한층 더 탄력성 있게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었다. 현재의 변경무역 방식의 다양성은 변경무역을 간단히 정의할 수 없게 하는 원인 되고 있다.

3. 변경무역의 두가지 형태

현재 일반적으로 변경무역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무역주체에 따라서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변경무역의 관리권을 갖고 있는 지방정부의 지정(또는 허가)을 받아서 현지 세관에 등록된 무역기업(다양한 이름을 가진

주2)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편집위원회편,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1985」 북경수리전력출판사 1985년 참조

변경무역회사)에 의한 변경무역이다. 이들 기업의 수출입 활동은 지방정부의 외국무역관리부문의 업무지도를 받고, 수출입 품목과 수량은 세관의 감독을 받는다. 이러한 종류의 변경무역 규모는 지방정부에 의해 집계되어 매년 「중국 대외경제무역연감」에 단편적으로 수록되고 있다(단, 전국적 집계량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변경지역의 주민이 개인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상업활동이다. 그들은 일정한 상한선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개인적으로 상품을 갖고 세관을 통과하여 상대국의 주민과 상품을 교환(또는 매매)하는 것이며, 중국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합법적인 활동으로 「암거래」와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대부분의 변경지역 지방정부는 이러한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측 국경부근에 「邊民互市」라고 부르는 전용시장을 설립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도 변경무역의 한 경우로 불리워지고, 최근에는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러한 거래가 오히려 중국사전인 「辭海」에 설명된 「변경무역」의 정의에 가까운 것이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를 집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기업에 의한 무역과 개인에 의한 무역을 모두 변경무역으로 정의하면서도 통계숫자로는 기업에 의한 변경무역 부분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4. 변경무역의 4가지 특성

중국 변경무역방식의 특징으로는 다음 4가지가 각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1) 첫번째 특징

우선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중국의 변경무역의 기본적인 특징은 그것이 중앙정부가 아니고 각 변경지역의 지방정부에 의해 관리·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통상적인 무역과는 달리 변경무역은 중앙정부의 수출입 계획과 국가에 의한 수출보조금제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중앙정부는 관세와 수출입허가등의 조치를 통해서 변경무역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지만 변경무역은 간단히 말하자면 그 변경지역을 위한 무역이다.

(2) 두번째 특징

변경무역의 또하나의 특징은 인접국가와 국제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바터무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은 국가의 공정환율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수입할 때에 중앙정부의 외화할당도 필요하지 않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의 대부분이 중국과 같이 외화부족으로 곤란해 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무역도 바터무역이 되지 않을 수 없다.

(3) 세번째 특징

변경무역의 세번째 특징은 같은 바터무역방식을 사용하

고 있는 국가간의 협정무역과는 달리 현행 행정지역 구분 하에서 인접국과 국경을 가진 변경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경제주체(기업 또는 개인)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즉 변경무역을 하는 것은 그 변경지역 경제주체가 가진 특수한 권리이며, 다른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기업은 직접 변경무역을 할 수 없다. 중국의 변경무역실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지역의 구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동력과 자본이 국내에서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없으며, 현지 지방정부의 허가가 없으면 지역을 넘어서 외국무역의 업무를 하는 기업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경제구조(특히 지방정부 재정청부제)하에서 지방정부가 변경무역 기업을 지정(또는 허가)할 때에 지역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현재 실제로 지방정부로 부터 지정되어(또는 허가를 받아) 변경무역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기업은 국영기업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명의를상 「국유」이지만 기업의 경영결과는 결국 귀속처인 지방정부의 재정자산 수입(이를테면 省운영기업은 성정부 재정자산, 縣(縣)운영기업은 현정부 재정자산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지역의 지방정부소유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변경무역에서 얻어진 직접 이익은 우선 그 지역에 귀속된다.

변경무역은 사실상 그 지역의 지방정부가 자기산하의 무

역기업(또는 개인)의 경영활동에 따라 그 재정수입의 증가와 지역경제의 번영을 꾀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실제 어느기업에게 변경무역의 권리를 주는가는 그 지방정부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 변경지역 이외의 지방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은 직접 외국기업과 변경무역을 할 수 없고, 반드시 변경지역의 지방정부 산하의 변경무역 기업을 통하여야 한다.³⁾

(4) 네번째 특징

변경무역의 마지막 특징은 무역의 직접적인 상대가 인접국에 소재하는 경제주체라는 점이다. 따라서 변경무역은 「지방무역」의 개념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지방무역의 경우, 그것은 통상 지방정부 소속의 무역기업이 행하는 바터무역 중에서 변경무역을 제외한 부분을 가리키고

주3) 이를테면 중국은 몇십년 전부터 지금까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하 북한)과의 사이에 국가간 협정무역을 행하여 많은 양의 수출입물자가 길림성의 국경에 있는 토문시를 경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에 대하여 그 변경지역의 지방정부에 있는 토문시정부는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동시에 1985년까지 북한과의 변경무역이 토문시의 상일급행정지역인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소속기업에 의해 독점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을 때에도 변경무역은 토문시라는 행정지역(또는 지방정부)에 그다지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이후 길림성 정부의 결정에 따라 토문시라는 행정지역이 직접 북한과 변경무역을 행하는 것이 인정되었을 때부터, 토문시 소속기업의 변경무역활동은 토문시정부의 중요한 재정수입 원천이 되었고, 시정부도 적극적으로 변경무역의 추진에 나서게 된 것이다.

있다.⁴⁾ 중국의 개별적 통계에서는 변경무역과 「지방무역」을 구별하지 않고 「지방변경무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때도 있지만 그것은 오해를 야기시키기 쉽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국에서 행해지는 무역활동 중에서 위와같은 4가지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변경무역이라고 정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명하게 이 정의는 앞에서 말한 「辭海」의 변경무역에 대한 정의 보다는 범위가 넓다.

5. 「소액변경무역」에 관하여

또 여기에서는 「소액변경무역」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중국 변경무역을 전체규모에서 본다면더라도 그것은 통상의 무역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그 의미로는 확실히 「소액무역」이다. 그러나 변경지역에 있어서 변경무역은 경제적 중요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규모면에서도 종종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통상무역 부분보다 크기 때문에 반드시 「소액」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장래의 발전가능성에서 보더라도 처음부터 「소액」을 변경무역의 특징으로 보는 것은 부적당하다.

주4) 이를테면 흑룡강성은 독자적으로 폴란드 등 동구국가와 바터무역을 행한 일이 있으며,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은 사천성도 구소련과 바터무역을 행한 일이 있다. 그것은 지방무역이라고 불리워지지만 변경무역은 아니다.

Ⅲ. 변경무역의 역사와 재개의 배경

1. 인접하는 행정지역과 국가

중국은 21,000km에 달하는 긴 국경선을 갖고 있다. 현재 인접하고 있는 독립국가는 북한,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카시미르),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 14개국이 나 된다. 한편 중국내에서 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성(자치구)은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 내몽고자치구, 감숙성, 신강위글자치구, 티벳자치구, 운남성, 광서장족자치구 등 9개에 달한다.(제1표)

제 1 표 중국의 행정구역별 인접국가

| 국내행정구역 | 인접국가 |
|---------|--|
| 요령성 | 북한 |
| 길림성 | 북한, 러시아 |
| 흑룡강성 | 러시아 |
| 내몽고자치구 | 러시아, 몽골 |
| 감숙성 | 몽골 |
| 신강위글자치구 |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카시미르), 인도(카시미르) |
| 티벳자치구 |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
| 운남성 |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
| 광서장족자치구 | 베트남 |

(출처) 필자작성

2. 변경무역의 개요

중국의 긴 국경선은 거의 높은산, 사막, 하천과 같은 자연조건이 험난한 곳에 위치하여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경지역은 외국과의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인구밀도도 낮은 편이다. 변경지역이 인접한 외국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낮은 수송비용을 보장하는 육상 통상루트의 존재(또는 건설 가능성)가 전제되고 있다. 따라서 교통조건이 좋은 지역은 변경무역을 빨리 발전시킬 수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무역이 어려워질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를테면 흑룡강성은 러시아의 극동지역과의 교통이 비교적 편리하기 때문에 변경무역을 확대시키는 것이 용이하지만 감숙성과 몽골의 인접지역은 인구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막지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변경무역이 불가능하다. 철도등에 의한 교통이 상당히 편리한 곳은 변경무역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국가간 무역의 「육지통상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었지만, 변경무역이 가능하게 되면 즉시 변경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중국은 다민족국가이며 20개 이상의 소수민족이 변경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외국과의 교통이 가능한 지역일 경우 그들은 역사적으로 국경을 넘어서 외국주민과의 사이에 깊은 혈연적,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다. 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전까지 역대 중국 중앙정부는 국경선에 대한 사

실상의 유효적절한 통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지에서 멀리 떨어진 변경지역의 경제는 오랫동안 국내 경제 중심지보다도 오히려 국경을 넘는 자연적인 경제적 중심과 연결되어 있었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그러한 경제관계는 국내에 통일된 시장이 발전된다 해도 완전히 소실되지는 않는다.

중국은 국토가 넓고 국내의 교통망도 아직 그다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의 수송비용이 상당히 비싸다. 특히 내지와외의 교통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변경지역의 경우 같은 제품을 내지 보다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쪽이 합리적인 경우가 있다. 1949년 이후 중국은 계획경제의 방침에 따라서 외국무역에 대한 국가독점을 선언했다. 그러나 인접국가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국가레벨의 무역관계라 하더라도 변경지역 주민의 세세한 수요까지 모두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가무역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무리였다. 이 때문에 특별로서 일부지역의 변경무역(변경지역의 특수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바터무역)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당시의 변경무역은 주로 국내시장의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지나지 않아서 지금처럼 변경무역을 통해서 지방기업의 생산확대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증가를 꾀하지는 못했다.

3. 흑룡강성의 변경무역

흑룡강성에서는 1957년부터 중·소 양국의 협의에 따라서

소련의 극동지구인 아무르주, 하바로프스크변경구, 빈해(濱海)변경구와 변경무역 관계를 맺어 1966년까지 누적무역액이 3,476만루블에 달했다. 그러나 그후 양국관계가 긴장되었기 때문에 변경무역도 중단되지 않을 수 없었다.¹⁾

4.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변경무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해산물의 공급을 멀리 중국연해지역에서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가까이 접하고 있는 북한의 함경북도에서는 중국의 조선족주민이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명태를 동해에서 대량으로 포획하고 있다. 중국 조선족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국정부의 협의를 거쳐서 1954년부터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와 북한의 함경북도 사이에 소위 「명태무역」이 시작되었다. 중국측은 식량, 섬유제품, 문방구등을 수출하고 명태등의 해산물을 수입했다. 그러나 중국의 「文革」으로 인하여 북한·중국 양국의 정치적 관계가 악화되고 따라서 그 무역도 중단되었다.²⁾

주1) 路鎖金「關於進一步發展中蘇邊境經貿關係的幾個問題」(「국제무역」 1991년 5기/유옥영 「中蘇邊境地方貿易發展的 回顧와 展望」) (국제무역 1989년 11기) 참조

주2) 필자는 1983년 부터 88년까지 중국 길림성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 근무하여 직접 북한과의 변경무역 정책관리를 담당하였고 길림성과 구 소련과의 변경무역의 개시준비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참고문헌을 명기하지 않은 관련사실은 필자의 실제 경험과 조사에 따른 것이다.

5. 운남성의 변경무역

운남성은 중국에서 소수민족의 수가 가장 많은 변경성이며 국경 부근지역은 내지와외의 교통이 불편하다. 이와같은 지리적 원인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국경의 양측 사람들은 국경의 속박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왕래와 통상을 행하는 관습이 있었다. 1949년 이후 북경으로부터 관리가 강화되었지만 변경지역 주민들 사이의 경제교류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중국정부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것은 개인적인 물물교환 활동에 한해서 행해질 뿐 국가에 등록된 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6. 신강위글자치구와 티벳자치구의 변경무역

신강위글자치구와 티벳자치구는 1949년 전까지는 중국 내지와외의 교통이 상당히 불편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제는 중국의 내지보다도 오히려 인접국과의 무역에 대부분을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0년대에 이르러 내지와 연결된 란신(蘭新) 철도, 칭장공로(靑藏公路)등이 생겨서 겨우 내지의 시장과 통합되었지만 인접국가와의 무역은 아직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흑룡강성과 길림성의 경우와는 달리 신강위글자치구와 티벳자치구의 경우는 국경가까이 있는 주민의 개인적 교류를 제외하면 외국과의 무역이 이미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기업에는 변

경무역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7. 그외 지역의 변경무역

내몽고자치구의 경우는 원래 내지와외의 경제관계가 상대적으로 긴밀했었지만 국경 양측의 방목민 사이에는 물물교환 등 개인적 교류가 계속되고 있었다.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에는 복잡한 변화가 있었다. 시기에 따라 국경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거나 완화되어서 개인적 교류도 국가간의 관계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다만 베트남과의 무역은 언제나 중앙정부가 국가간 협정무역을 통하여 행해 왔기 때문에 지방정부에게 그 권리를 양도한 일은 없었다. 따라서 「文革」전까지 실제로 중국 변경지역 지방정부가 무역의 부분적 권리를 갖고 지방정부소속 기업에 무역을 행한 경우는 흑룡강성의 대소련 변경무역과 길림성의 대북한 변경무역뿐이다.

8. 「文革」과 변경무역

변경무역은 양국의 우호관계와 비례하는 상관관계가 있고, 양국의 자국경제에 대한 집권적 통제와 반비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文革」때는 경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한층 엄해져서 소위 「자력갱생」의 경제방침 때문에 대외무역에 관한 권한은 모두 중앙으로 집중되었다. 또 주변의 거의 모든 나라와의 국가관계

가 역사상 최악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변경무역도 중단되었던 것이다.

9. 개방정책과 변경무역의 재개

1978년 중국 제11기 3중전회는 개방정책이 시작되는 개시 시점이다. 중국정부는 농촌의 개혁과 동시에 1979년부터 무역체제의 개혁을 시작했다. 그 개혁의 기본적인 중점은 지방분권화이다. 즉 지방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각 성(시·자치구)소속 일급 무역기업에게 외국과 직접 무역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그 때문에 전국의 외국 무역 기업수는 개혁전의 수십개 정도에서 일순간에 수천개로 늘어났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지도하는 수많은 책임도 성(자치구·시)의 지방정부에 양도했다.

그러나 수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엄격한 통제에 남겨졌다. 대다수 무역기업의 경영은 1988년경까지는 중앙정부의 재정과 직접 결부되어 있어서 수출에서 획득한 외화의 대부분을 중앙에 상납하고 일정비율의 「외화유보」분량만이 지방정부에 남겨졌다. 그러나 1988년까지는 이를테면 지방정부에 외화가 있어도 지방에 필요한 재료를 수입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외화사용 한계」라는 형태로 중앙으로부터 또 한번 제한을 받아야 했다. 수입품목과 수량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제한이 있다. 외화와 수입품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는 지방정부의 외화획득을

위한 적극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특히 변경무역에 흥미를 갖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변경무역은 바터무역이기 때문에 수입할 때에 외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수입한 물자도 전부 지역의 생산과 소비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별적인 수입품목과 수량에 대하여는 역시 중앙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수속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중앙정부도 희소한 외화를 사용하지 않고 수입하는 것에 대하여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중국과 인접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가 섬유제품, 일용 공업제품등 소비재의 품질과 생산능력면에서 중국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제품은 그들 나라에 커다란 시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변경무역으로 생기는 수출수요는 지방공업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실적 이익은 역시 국내외의 상대가격의 격차에 따라서 얻게 되는 변경무역의 이윤이다. 그것은 지역경제발전의 중요한 자금원이 되고 그 일부는 직접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변경무역의 확대에 강한 인센티브를 갖고 있다.

한편 1980년대부터 대다수의 인접국과의 우호관계가 서서히 회복되어 경제적 교류도 더욱 빈번해졌기 때문에 변경지역의 지방정부와 기업이 인접국가의 변경지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다. 따라서 각 변경지역의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변경무역의 재개(또는 개시)를 요구하였고 중국정부도 그것을 개방정책의 일환으로서 추진한 것이다.

IV. 변경무역의 현황

최근 중국의 변경무역은 주로 구소련, 북한, 몽골, 파키스탄, 네팔,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과 행해지고 있다. 그중에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구소련, 북한, 미얀마와의 변경무역이다.

1. 구소련과의 변경무역

(1) 흑룡강성과 내몽고자치구의 대소련 변경무역

소련이 붕괴하기 전에 중국에서는 흑룡강성, 내몽고자치구, 신강위글자치구, 길림성등 4개의 변경성(자치구)이 구소련과 접하고 있었다. 1982년 4월 중·소 양국정부는 흑룡강성과 내몽고자치주가 소련 극동지역과 변경무역을 하는 것을 협의하고 중국측의 두개 성과 자치구가 각각 자기에게 소속한 무역회사를 지정하여 구소련의 전소련극동국외무역회사와 바터무역을 하기로 했다.

변경무역은 1983년부터 정식으로 실시 되어서 같은 해의 수출입총액은 흑룡강성이 1,591만 스위스프랑, 내몽고자치구는 273만스위스프랑에 달하였다. 계산단위를 스위스프랑으로 한 것은 국가간 협정무역과 같이 순 정치적 고려에서 출발한 것이어서 현실적인 스위스 통화의 가치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수출입재의 상대가격은 국가간 협정무역가격, 세계시장가격등을 고려하여 교섭에 의해 결정되지만 스위스프랑의 실제가치에서 본다면 가격수준이 일반적으로 국

제시장가격보다 높다. 따라서 스위스프랑으로 나타내는 통계수자는 실제의 무역규모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측은 쇠고기, 통조림, 보온병, 섬유제품 등을 수출하고 자동차, 냉장고, 화학비료, 철강재 등을 수입했다. 무역의 수량은 품목별로 가격을 협의한 가운데 금액의 균형이 맞도록 조정하여 결정하고 무역기업은 수입한 제품을 국내시장에 판매하여 얻은 대금으로 수출재의 매입비용을 얻는다.

국내시장에서 수출재의 매입가격과 수입재의 판매가격은 통제가격의 구속을 받지 않고 수급상황에 따라서 무역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변경무역의 경영이윤은 사전에 결정된 일정액(또는 일정의 비율)을 성(자치구)정부재정에 상납하고 남은 부분은 변경무역기업의 내부유보와 종업원의 보너스등에 지출된다. 소위 「경영책임제」의 구조로 운영되고 일반적으로 경영에 결손이 생겨도 지방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변경무역에 의한 이익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은 의미가 없다.

다만 변경무역은 바터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이 반드시 균형이 맞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무역이 흑자가 되면 그 분량만큼의 자금을 오랫동안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을 압박한다. 당초에는 무역기업이 중국측에서 2개, 구소련측에서 1개뿐이었고 게다가 중·소양측이 무역을 희망하는 제품의 종류도 대개 동일했다. 중국측의 2개기업은 각각 다른성(자치구) 정부에 소속해 있

기 때문에 각각 소련의 전소련극동국외무역회사와 상담하여 바터무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국내에 있어서는 그 두개 기업의 대외무역 교역조건을 조정하는 부문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무역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기업 상호간의 경쟁이 불가피하였다. 그것은 변경무역의 한가지 특징이기도 하다. 즉 변경무역을 하는 기업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기업의 수가 적은 쪽이 상대측의 경쟁을 이용하여 교역조건을 좀 더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다.

(2) 신강위글자치구의 대소련 변경무역

1986년 1월 중·소 양국정부는 여러차례의 협상에서 중국측의 신강위글자치구 소속인 변경무역회사가 구소련 중앙아시아에 있는 전소련동방국외무역회사를 상대로 바터무역을 하기로 동의하였다. 같은 해의 무역총액은 400만스위스프랑에 달하였으며, 중국측은 주로 섬유제품, 일용품등을 수출하고 구소련측의 화학비료, 철강재등을 수입하였다.

(3) 길림성의 대소련 변경무역

1988년부터 길림성도 대소변경무역을 시작하였다. 길림성은 구소련과 불과 250km 정도의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세관이나 기존에 개설된 통상루트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행정지역의 구분에서 보면 길림성도 소련과의 국경을 가진 「변경성」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소변경무역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같은

해의 무역액은 모두 1,209만스위스프랑에 달하였다. 이처럼 중·소 변경무역은 1983년 정식으로 재개되고 나서 급속히 증대하였다. (제 2 표)

제 2 표 중국과 소련의 변경무역

(단위 : 만, 스위스프랑)

|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
| 黑龍江省 | 1,591 | 2,791 | 3,255 | 2,312 ¹⁾ | 3,814 ²⁾ | 19,614 | 57,047 | 71,985 | 106,417 |
| (輸出) | 818 | 1,373 | 1,593 | 1,014 | 1,856 | 11,298 | 33,644 | 37,588 | 52,595 |
| (輸入) | 773 | 1,418 | 1,662 | 1,298 | 1,958 | 8,316 | 23,403 | 34,397 | 53,822 |
| 內蒙古自治區 | 273 | 1,700 | 4,215 | 4,308 | 7,054 | 12,029 | 17,990 | 23,029 | 33,968 |
| (輸出) | 137 ³⁾ | 850 ⁴⁾ | 2,222 | 2,268 | 3,524 | 6,438 | 9,442 | 10,518 | 18,469 |
| (輸入) | 136 | 850 | 1,993 | 2,040 | 3,530 | 5,591 | 8,548 | 12,511 | 15,499 |
| 신강위궈자치區 ⁵⁾ | | | | 400 ⁶⁾ | 2,631 | 2,575 ⁷⁾ | 10,839 | 8,866 | 13,116 ⁸⁾ |
| (輸出) | | | | 200 | 1,428 | 1,287 | 6,349 | 4,401 | 6,986 |
| (輸入) | | | | 200 | 1,203 | 1,288 | 4,490 | 4,465 | 6,130 |
| 吉林省 | | | | | | 1,209 | 8,221 | 11,123 | 15,954 ⁹⁾ |
| (輸出) | | | | | | 523 | 5,988 | 5,367 | 8,187 |
| (輸入) | | | | | | 686 | 2,233 | 5,756 | 7,767 |
| 輸出總額 | 955 | 2,223 | 3,815 | 3,482 | 6,808 | 19,546 | 55,423 | 57,874 | 86,237 |
| 輸入總額 | 909 | 2,268 | 3,655 | 3,538 | 6,691 | 15,881 | 38,674 | 57,129 | 83,218 |
| 計 | 1,864 | 4,491 | 7,740 | 7,020 | 13,499 | 35,427 | 94,097 | 115,003 | 169,455 |

출처:〈中國對外經濟貿易年鑑〉 편집위원회편 〈中國對外經濟貿易年鑑〉 各年판
(주)

- 1), 2), 5), 9)는 US달러로 표시되어 공표된 숫자이지만 실제의 무역가격은 스위스프랑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위하여 모두 년도말의 환율로 환산했다. 참고환율은 1US달러당 1.60(1986년), 1.64(87년), 1.53(88년), 1.50(89년), 1.27(90년), 1.39(91년) 스위스프랑이다.
- 3), 4), 6), 7)의 공표된 숫자는 수출입의 총액뿐이지만 통상 수출입 균형을 맞추기 위해 추계하였다.
- 몽골과 파키스탄과의 변경무역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다. 공란도 무역 개시 전이다.

(4) 중·소 변경무역의 제 1 단계

구소련과의 변경무역은 구소련 국내정세와 중국내부의 정책변화에 따라서 대체로 2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즉 1983년부터 1987년경까지가 제1단계이고, 그 이후 1991년까지가 제2단계이다. 다만 소련이 붕괴된 1991년 이후의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 제2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87년까지는 변경무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다.

그 당시 구소련측은 주로 국가무역부의 하부기관인 전소극동국외무역회사와 전소동방국외무역회사가 변경무역 업무를 독점하였고, 중국측도 성(자치구)의 일급 무역회사만이 무역에 참가하였다. 이것은 낮은 수준의 국가간 협정무역과 유사한 것이다. 1987년 1월 1일부터 구소련정부는 새로운 무역정책을 실시하여 많은 기업부문들이 직접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실제로 무역을 하기까지는 준비기간을 필요로 하니까 새로운 정책의 효과는 1988년부터 나타났다고 한다.) 그것은 무역에 대한 국가의 독점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측에서는 성(자치구)보다 아래급의 행정지역 지방정부가 지금까지의 성(자치구)의 독점무역방식에 강한 불만을 갖고 직접 상대방과 변경무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였다. 이를테면 흑룡강성에서 구소련과 인접하고 있

는 흑하지구, 동강, 綏芬河市가 직접 자체 산하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변경무역에서 얻은 이익을 그 지역에 남기려고 하였다. 이러한 요구가 수용된 결과 1987년말경부터 중국에서도 성(자치구)의 일급기업에 의한 변경무역의 독점이 붕괴되었다. 1987년말에 위에서 말한 흑룡강성의 3개지역은 국경선의 상대측과 1회에 한하여 바터무역을 하였지만 198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변경무역을 개시하였다.

(5) 대소련 변경무역의 제 2 단계

1988년 중국정부는 대소변경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흑룡강성에 대하여 8개 항목의 특혜조치를 주었다. 그에 따라서 흑룡강성의 대소변경무역은 단숨에 5배이상 급증하였다. 직접 변경무역을 하는 독립적인 무역회사(국경과 접하고 있는 각각의 작은 행정지역 지방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의 숫자도 대폭적으로 늘어나서 흑룡강성 정부는 같은 해 10월 성 변경무역관리국을 설치하고 성내 각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변경무역을 관리·조정하기로 하였다.

무역방식도 단순한 물물교환에서 노무와 기술합작에 따른 결제로까지 발전하였다. 1988년에 흑룡강성은 연 1,200명의 노동자와 기술자를 파견하여 야채재배, 건축, 벌목등의 노동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그 가치는 3,086만스위스프랑에 달하였다.¹⁾ 구소련측도 기술자를 파견하여 공장의 기술

주1) 유옥영 前揭論文

지도와 설비의 갱신에 협력하였다. 1990년 한해동안 흑룡강성은 대소변경무역을 통하여 대략 455,000톤의 화학비료, 73,000입방미터의 목재, 92,000톤의 철강재, 42,000톤의 해산물을 수입하였고, 이를통해 지방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²⁾ 제 2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내몽고자치구, 신강위글자치구, 길림성의 대소변경무역도 흑룡강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커다란 발전이 있었다.

변경무역의 급속한 발전은 동시에 정책당국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였다. 우선 변경무역이 단순히 변경지역 주민의 생활과 생산에 필요한 것을 서로 교환하는 의미로서의 무역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변경지역이 갖고 있는 변경무역이라는 특수권리와 수단을 이용하여 무역이윤을 쫓는 활동이다. 이제까지 수출품의 90%이상이 그 변경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조달되고 있고 그중에는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을 위해 경쟁적으로 수요되는 제품도 적지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 중국측 무역회사의 수가 많고 게다가 각각의 지방정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회사들간의 심한 경쟁도 피할 수 없다. 무역을 위해서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거의 대부분의 무역기업이 구소련

주2) 조문청 「蓬勃發展的 흑룡강성 변경경제무역」 (<중국대외경제 무역 연감>편집위원회편 「중국 대외경제무역 연감 1991/92」 홍콩 중국광고유한공사 1991년.)

측 무역기업의 수출능력을 과대평가한 것에 있다. 최근 구 소련에서는 경영운영이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식료품과 일용품에 대한 수입수요에 비하여 수출능력이 태부족이다. 따라서 체결된 바터무역 계약을 많지만 구소련측의 실제 계약실행률은 30%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았다.³⁾ 중국의 각 무역회사는 자기들의 무역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심한 수출경쟁을 하였지만 결국 커다란 흑자에 빠져서 경영난으로 고민하는 기업(지역)도 나왔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같이 변경무역은 바터방식이기 때문에 흑자가 되면 그만큼의 자금회수가 불가능하다. 중·소 변경무역의 누적흑자는 1991년까지 이미 2억스위스프랑 이상이 되어 중국측이 제공한 노무서비스까지 합하면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⁴⁾

주3) 路鎮金 前揭論文/黃枚·焦鋼英「解決對蘇貿易 順次的一種有效途徑」(「국제무역」1991년 5기)/〈국제무역〉편집부「中蘇경제무역 공작 연구 검토회 종합평론」(同誌 1989년 11기)

주4) 對蘇 변경무역에 큰폭의 흑자가 난 원인은 순수하게 경영전략상의 문제이며 국가협정무역에서 자주 나타나는 흑자와는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 중국측의 각 변경무역회사는 수입이 없으면 경영이윤은 물론 수출세의 대금조차 받을 수 없다. 최대의 경영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각 변경무역회사는 자신의 무역총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이 수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중국측 회사들 간의 경쟁이 심한 현 상태하에서는 우선 자신이 먼저 많은 양을 수출하여 구소련측이 보다 빨리 자기의 회사로 같은액의 수출을 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도록 하는 것이 각 변경무역회사의 경쟁수단이다. 그러나 그 경영전략은 구소련측의 수출 잠재력을 과대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종종 중국측 경쟁회사의 수출경쟁으로 끝나버리고 자신의 수입을 확대하려는 본래의 목적은 실현되지 않는다. 한편 중국의 대소 변경무역회사는 통상 각 省(자치구) 또는 市의 일급 지방정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규모가 크고 또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 은행융자를 받기가 수월하다. 그 융자는 지방정부에 소속해 있는 단지 하나밖에 없는 국영 변경무역회사를 파산시키지 않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로서 보조금과는 성질이 다르고 나아가 중국의 모든 국영기업이 공유하는 공통적인 특혜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중국측의 무역흑자를 존속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 융자는 어디까지나 무역상대측의 계약이행에 의한 무역흑자의 해소에 따라 점차적으로 원금을 반제하는 것이며 재건될 전망이 없는 생산기업이 장기간 보조금을 받으면서 적자경영을 계속하는 것과는 명확히 구별된다.

(6) 중·소 변경무역의 방식과 문제점

양국간의 변경무역 기본방식은 각각의 국영무역회사간의 정식무역계약에 따른 바터무역이다. 매회의 계약에서는 재화의 수출입이 금액적으로 균형이 맞아야 하고, 실행시 약속한 대로 수출할 수 없을 경우에 발생하는 적자부분은 반드시 실물로 신속히 메꾸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이처럼 변경무역에서는 통상무역의 국제통화에 의한 결제 및 은행의 신용장제도등과는 달라서 계약 주체의 신용과 계약실행 의무를 중요시하고 있다.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만일 상대측의 수출이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역흑자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그러한 상황을 예측하여 자기들의 수출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소위 「對等發貨」(어떤시기에 실제로 수입된 재화의 가치에 상당하는 재화만을 수출하여 무역흑자를 피하는 것)의 원칙이며 바터무역방식 고유의 결합이다.

만일 무역기업의 경영전략에 실수가 있어서 「대등발화」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역흑자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 하나는 수입품의 구성문제이다. 이제까지 중국측이 주로 구소련측으로부터 수입을 기대한 것은 원재료였지만 1989년 4월 1일부터 구소련정부는 원재료수출에 대한 수출허가제도를 실시하여 수출을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재의 수출에도 비싼 수출세를 부과하였다. 물론 그 정책은 기

존계약의 실행을 고려하여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변경무역의 확대에 커다란 제약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7) 중·소 변경무역 확대의 열쇠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변경무역 확대의 열쇠는 러시아동구소련측의 공급능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금후 러시아동구소련지역의 경제성세가 안정된다면 변경무역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중국측도 수입구조를 종래의 원재료 중심에서 기술과 설비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러시아동의 구소련지역의 기술과 설비는 서방측에 비해 수준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중국측에서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않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기술과 설비가 외화를 필요로 하지 않고 가격도 낮다는 메리트가 있다면 수입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 상태에서 수입이 늘어나면 중국측의 섬유제품등의 공업제품 수출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소련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하는 것은 변경무역의 기술적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

(8) 개인차원의 중·소 변경무역

구소련지역과의 변경무역에서 최근 상당히 주목되는 것은 양국의 개인(주로 변경지역에 사는 주민)에 의한 상업활동이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동구소련지역의 정치·경제정세에 급격한 변화가 생겨서 국가관계가 대폭적으로 개선

되었다. 그에 따라 예전엔 거의 불가능하였던 개인의 출입국이 가능하게 되고 그 수속절차도 대폭적으로 간소화되었다. 최근 러시아등의 구소련지역에는 소비재가 극단적으로 부족하고 거꾸로 중국에는 풍부한 일용품 생산잠재력이 있다. 양국의 재화의 상대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개인에게는 상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다. 개인에 의한 무역도 변경무역의 일부분이어서 양국 경제에 대한 역할은 기업간의 무역과 기본적으로는 같다. 그외에 재화의 종류면에서 기업간 무역에 대해 상당히 보완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측으로서는 이제까지의 단계로 보아 그것을 지지하고 있다. 그 확실한 규모는 불분명하지만 최근 상당히 활발해 지고 있는 것으로 주목된다.⁵⁾

2. 북한과의 변경무역

(1) 중국·북한 변경무역의 재개

길림성과 요령성은 북한의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의 4개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중국·북한 양국은 지금까지도 바터방식으로 국가간 협정무역을 계속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의 중요한 무역상대국이다. 그러나 중국·

주5) 상세한 것은 이춘영(社會特寫新疆 來自獨聯體的購物者) (「瞭望」 1992년 17기)를 참조

북한간 협정무역에서는 중국측이 흑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결국 바터무역에 있어서의 흑자는 상대국에 대한 무이자 차관과 같기 때문에 순 경제적 측면에서 말하면 중국측은 그것에 그다지 흥미를 갖고 있지 않으며 국가간 협정무역을 확대할 여지도 그만큼 크지 않다. 따라서 북한측은 변경무역을 국가간 협정무역의 보조수단으로 이용하여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한층 더 긴밀하게 하려 하고 있다.

한편 길림성과 요령성도 변경무역을 통하여 변경지역의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다. 양국의 특수한 우호관계하에서 성·도 사이에는 이미 지방정부차원의 긴밀한 관계가 존재하며, 문화·스포츠등의 분야에서 여러가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 무역체제의 개혁을 배경으로 양국의 변경무역은 국가간의 새로운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지방정부간의 협의에 의해 1982년경 순조롭게 재개(개시) 되었다. 당초에는 길림성의 연변조선족 자치주 소속의 무역회사와 북한의 함경북도 소속인 도지방무역회사간과 요령성 단동시 소속의 무역회사와 북한의 평안북도 소속인 도지방무역회사 사이에서 바터무역이 행해졌다.

당시의 무역은 중국측이 대두유와 콩깨묵을 수출하고 북한측이 명태를 수출하는 전형적인 「명태무역」의 재개였다. 명태는 중국의 연변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주민 사이에 전통적인 수요가 있었고 북한에서는 대두의 생산량이 적어서 식물유와 된장의 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소위 「명

태무역」은 쌍방의 경제에 있어서 보완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2) 중국·북한 바터무역의 방식

중국·북한 변경무역의 방식은 구소련과의 경우와 대체로 같다. 쌍방은 우선 수출 가능한 재화의 리스트를 제출하여 서로 흥미가 있는 품목의 가격을 협의한 후 전체 수출입 균형이 맞도록 거래수량을 조절한다. 가격의 계산단위는 국가간 협정무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위스프랑이지만 실제 스위스프랑의 가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실제 스위스프랑의 가격에서 본다면 무역재의 가격수준이 상당히 비싸게 설정되므로 중국·북한 변경무역의 통계숫자도 실제의 무역규모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중국·북한 변경무역의 가격기준은 명태의 가격이라 해도 좋다.

그것은 소위 「명태무역」을 재개할 때 국가간 협정무역의 가격에 따라서 최초로 스위스프랑 표시의 명태가격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중국측의 수출품인 대두유와 콩깨묵의 가격은 명태와의 물물교환 비율을 협의한 후에 각각의 스위스프랑 표시가격을 붙였다. 그후 새로운 무역품목의 가격을 협의할 때에는 이제까지의 무역재와의 물물교환 비율을 고려하여 점차로 가격을 결정하지만 일반적으로 한번 결정된 가격을 변동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의 바터무역계

약을 실행 완료한 후에 새로운 계약의 실행으로 옮겨간다.

수출입균형의 유지는 중국·북한 변경무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중국의 변경무역회사는 거의가 경영규모가 작기 때문에 흑자가 커지면 경영의 계속이 불가능해 진다. 최근 변경무역은 단순한 바터무역에 머물지 않고 북한에 길림성에 의한 몇개의 합영기업의 설립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합영기업의 투자액과 이윤의 반송등의 결제도 변경무역과 결부되어 행해지고 있다.

(3) 자주적인 경영에 의한 무역이윤의 획득

중국측 무역회사의 경영은 자주성이 강하다. 무역기업은 경영이윤의 일정액(또는 일정비율)을 소속하는 지방정부의 재정에 상납하게 되어 있을 뿐이고, 지방정부는 변경무역의 경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수출재의 매입가격과 판매가격도 기업이 시장의 수급에 따라서 자주적으로 결정한다. 일부 재화에 관해서는 수출과 수입할 때에 중앙의 관련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밖의 재화는 완전히 자주적으로 경영하게 되어 있다.

이와같이 경영의 자주성이 강하기 때문에 변경무역의 권리를 가진 무역회사는 국내외의 재화의 상대가격차를 이용하여 대량의 무역이윤을 획득할 수가 있다. 경제개혁 가운데 무역이윤의 존재는 그것을 획득할 권리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경쟁 및 논의를 불러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길림

성에서 변경무역 체제의 변화는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일례이다. (다만 요령성의 경우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단 동시 소속의 무역회사가 변경무역을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

(4) 길림성의 독점적 변경무역체제의 변화

길림성에서는 1984년경까지는 지방수준의 협의를 통하여 이미 연변조선족자치주, 장백자치현, 통화지구가 각각 북한의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의 도 소속 무역회사를 상대로 변경바터무역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변경무역의 이윤은 무역을 독점적으로 하는 주·지구의 일급(장백자치현 제외) 무역회사와 그들이 소속하고 있는 지방정부에 남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지구이하의 행정지역인 각 변경시·현은 그것에 불만을 갖고 스스로 직접 북한과 변경무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였다.

본래 「변경지역」의 개념자체는 애매한 것이어서 행정지역의 구분도 인위적인 것이다. 이를테면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물론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변경주」이지만 연변조선족자치주 산하의 6개 현, 두개 시 가운데 5개 현, 1개 시는 직접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변경현」, 「변경시」이다. 「변경주」가 변경무역의 권리를 독점해야 하는가 아니

면 「변경현」, 「변경시」도 그 권리를 보유해야 하는가는 완전히 인위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결국 김일성 정부의 결정에 따라 기존의 주·지구 소속의 일급 무역회사 외에 모든 변경시·현도 자신에게 속한 무역회사를 통하여 직접 북한과 변경무역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 각 도의 무역회사 체제는 그대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상대를 둘러싸고 중국은 복수의 회사가 경합하여 무역하는 상태가 되었다. (1985년경에는 북한의 청진직할시가 함경북도에 합병되어 북한의 무역회사 하나가 감소하였다.) 그러한 경쟁은 물론 중국측의 교섭력을 저하시켜 새로운 무역품목의 가격설정과 수출입품목, 수량의 조정시에 중국측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5) 북한측의 새로운 무역회사의 참여

한편 북한측에서도 경쟁이 일어나는 새로운 상태가 발생하였다. 기존 변경도의 지방무역회사 뿐만아니라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않은 다른 도 소속의 무역회사와 중앙정부 부문 소속의 무역전문회사까지도 중국의 변경무역회사와 손을 잡고서 변경무역에 참여한 것이다.

북한은 국내경제면에서는 통제가 심하지만 외국무역면에

서는 각 도 지방정부와 무역회사에 상당한 자주권이 있는 것 같다⁶⁾ 이를테면 각 도는 도 소속 지방무역회사를 통하여 직접 외국무역을 하며 수입재의 사용과 국가생산계획을 초과한 지방제품의 수출에 있어서도 일정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

북한내에서는 재화의 조달이 국가계획의 엄격한 감독하에 있어서 중국 변경무역회사처럼 국내 어느곳에서나 조달할 수 있는 사정은 아니다. 북한의 지방무역회사의 수출재화는 통상 중앙정부가 계획하여 결정한 수출품목·수량의에 자기들 지방에서 초과 생산된 산출품에 제한되고 있다. 북한측의 많은 무역회사가 변경무역에 참여하면 전체적으로는 국가에서 할당받은 수출재의 품목과 수량이 많아져서 수출능력도 커지게 되기 때문에 양국의 변경무역 규모도 커진다. 따라서 지금의 중국·북한 변경무역은 단순한 「변경지역간의 무역」이 아닌 중국의 변경지역 무역회사가 북한의 여러 무역회사를 상대로 교의적으로 행하는 바터무역이다.

주6) 필자의 북한 지방정부 무역책임자와의 교제 및 그밖의 근무경험에 의함.

(6) 중국·북한 변경무역의 무역재화

구소련과의 변경무역을 할 경우에도 같지만 중국·북한 변경무역에 있어서도 어떻게 수출입 재화의 구조를 개선하여 무역에서 이익을 최대화할까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중국의 변경지역 지방정부는 무역이윤이라는 직접이윤 외에 지방의 농·공업생산의 증가라는 2차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될수 있는한 지방의 농·공업생산에 필요한 철강재, 시멘트, 화학비료등의 생산용 원재료의 수입을 희망하고 섬유제품, 일용 공업제품등의 소비재 수출을 통하여 지방기업의 생산수요확대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에서는 주로 식량, 사료등의 농산품수입을 희망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수출 가능한 재화로서는 해산물등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철강재, 시멘트, 화학비료등은 북한측이 국가간 협정무역 가운데에도 계약대로 수출량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변경무역의 수입품목에서 그것들을 제외 해왔다. (최근 중국정부는 그 제한을 완화 해 왔다). 명태도 중국·북한 국가간 협정무역에 있어서 중국측의 중요한 수입품목의 하나이지만 소수민족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경무역을 통해 일정량만을 수입하는 것이 허가되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측에서는 국내의 공급도 부족하기 때문에 명태를 포함한 해산물의 수출증가가 극히 곤란한 상태이다.

이와같이 중국·북한 변경무역의 발전에 불리한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변경무역의 총액은 상당히 증가하였다.(제 3표) 그것은 쌍방의 무역회사가 서로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여러가지 무역의 기회를 이용했기 때문이다.⁷⁾

중국·북한 양국의 변경무역에는 장기적으로 무역가능한 재화의 품목이 그다지 많지 않으며 또 무역의 급격한 확대도 어렵기 때문에 여러가지 적은 규모의 상호 보완적 무역을 통해서 변경지역의 경제발전에 확실한 공헌을 하였다.

주7) 중국·북한 변경무역 중에서 특기해야 할 몇가지 예가 있다. 그 하나는 1984년경부터 길림성과 북한 사이에 4년이상 계속된 옥수수 와 콩의 바터무역이다. 북한측의 제안에 따라 행해진 이 무역은 북한측의 콩과 중국측의 옥수수를 일정한 비율로 교환하는 것이다. 길림성은 중국의 옥수수 주산지이며 이 무역에 의해 당시 옥수수의 보관상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주민에 대한 옥수수 공급을 증대하고 또 상대가격차에 따른 무역이윤도 얻을 수가 있었다. 북한측의 입장에서 보면 그 무역에는 옥수수 기름의 채취이용 식량과 사료의 수량증가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측된다. 결국 중·조 쌍방이 모두 만족해한 이 무역은 4년이상 계속되어 길림성은 합계 20만톤에 가까운 옥수수를 수출하였고 그것에 상당하는 콩을 수입하여 도시 주민에게 공급한 것이다.

또하나의 예는 1986년경부터 2년이상 계속된 「解放」트럭과 목재의 바터무역이다. 길림성 장춘 제1자동차공장은 그당시 이미 구형인 「해방」트럭의 생산을 중지하고 모델을 바꾼 새로운 트럭의 생산을 시작하고 있었지만 전국 각지에는 아직 구형인 「해방」트럭의 재고가 남아 있었다. 북한측은 부품과 수리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형인 「해방」트럭 수입을 요망하고 있었다. 그 대금으로는 구소련에서 수입한 목재를 제공하게 되었다. 당시 북한은 많은 노동자를 구소련에 파견하여 벌목의 노무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그 대금을 벌목한 목재로 받았다고 한다. 한편 중국에는 건설용 목재가 상당히 부족하였기 때문에 그 무역은 쌍방에서 유리한 것이어서 즉시 계약이 성립되었고 구소련에서 들여온 목재는 북한·소련 두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연변조선족 자치구에 직접 운반되었다. 구형인 「해방」트럭의 수입이 끝난후에도 구소련에서 수입한 목재는 여전히 북한측의 중요한 수출품목이 되어 연변조선족 자치주는 그 유리한 지리조건을 이용하여 중국·북한·소련 3국을 연결하는 목재무역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무역재화의 종류는 약 200종류에 달하지만 중국측은 주로 식물유, 사료, 섬유제품 등을 수출하고 북한측에서 각종 해산물 및 목재, 철 부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제 3 표 중국과 북한의 변경무역

(단위 : 만, 스위스프랑)

|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
| 吉林省 | 103 | 1,199 | 4,445 | 10,987 | 8,656 | 12,772 | 15,796 | 22,856 | 14,802 | 12,888 ²⁾ |
| (輸出) | 52 | 664 | 2,110 | 5,758 | 4,472 | 6,726 | 7,870 | 11,175 | 8,152 | 6,733 |
| (輸入) | 51 | 535 | 2,335 | 5,229 | 4,184 | 6,046 | 7,926 | 11,681 | 6,650 | 6,155 |
| 遼寧省 ¹⁾ | | | | | | 287 | 724 | 1,532 | 1,184 | 1,754 |
| 計 | | | | | | 13,059 | 16,520 | 24,388 | 5,986 | 14,642 |

(출처) 길림성의 통계숫자는 필자의 근무경험과 현지조사에 의함.

요령성의 통계숫자는 제2표와 같음.

주1) 요령성은 1982년부터 변경무역을 개시하였지만 86년까지의 통계숫자 및 수출입별 통계숫자가 공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공표숫자의 단위는 모두 US달러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요령성도 스위스 프랑을 계산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위하여 각 해당 연도의 연말 환율로 환산하였다. 참고환율은 제2표의 주를 참조

2) 길림성의 1991년 공식통계 수자는 9,272만US달러로써 이중 수출 4,844 수입 4,428만 US달러로 되어 있다.

(7) 중국·북한간의 수송효율의 향상

양국의 지방정부는 변경무역의 역할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 변경무역의 수송을 더욱 더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길림성과 북한의 함경북도 지방정부는 1988년에 협의를 통하여 길림성 연길시에서 함경북도 청진시까지의 도로직통수송

업무를 개시하기로 동의하였다. 그에 따라서 양국 변경무역 회사의 화물수송트럭은 화물을 적재한 채로 국경을 통과하여 직접 상대의 회사창고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북한 간의 철도수송 능력부족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8) 개인차원의 중국·북한 변경무역

중국·북한 변경지역의 경제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한가지 분야가 있다. 그것은 변경지역 주민에 의한 개인간의 물물교환 활동이다. 중국·북한 국경 가까이에 있는 각 변경시·현에는 60만이상의 조선족이 살고 있고 그중의 대다수는 북한에 친척관계가 있다.

매년 수만명이 넘는 양국의 변경지역 주민이 서로 친척방문을 위해 국경을 넘는다. 그러나 자국의 화폐는 상대국에서 직접 통용되지 않는다.(북한의 화폐는 중국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중국의 화폐는 북한에서 태환권으로 바꾸어 특별한 외화전용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액면의 북한 화폐보다 가치가 높다. 그러나 북한의 실정에서 본다면 그것은 직접 상품을 갖고 가는 것보다 불리하다고 한다.)

따라서 친척방문을 위해 상대국에 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화폐대신에 상품을 갖고 간다. 양국에는 재화의 상대가격에 커다란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매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양국의 국경통과 수속은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일정수량 이하의 물품은 면세로 통과시킨다. 그 물품은 양국의 자유시장(북한의 경우는 「암시장」인 경우가 많다.)에서 판매된다. 물품의 종류는 수백종류에 달하여 완구에서 소형기계까지 여러가지의 물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거래의 확실한 규모는 불투명하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매매거래」에 의해 부유하게 되었다고 하며 친척방문의 명목으로 이러한 거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적지않다. 실은 이러한 개인간의 물물교환도 변경무역의 하나의 특수방식이어서 뒤에서 소개하는 미얀마와 베트남의 「邊民互市」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9) 중국·북한 변경무역의 주요한 문제와 미래

이제까지 중국·북한 쌍방은 상대의 수출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해 왔기 때문에 무역의 급격한 확대에 지나친 기대를 걸고 있지 않았으며 북한의 경제정책에는 구소련같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일이 없었다. 따라서 중국·북한 변경무역의 규모에도 구소련과의 무역과 같은 급격한 증대는 없었다. 중국·북한 변경무역에 존재하는 주요한 문제는 역시 무역재의 종류와 수량이 적다는 것이다. 만일 북한이 향후 경제적인 면에서 좀 더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여 지방의 자주권을 확대하게 된다면 양국의 변경무역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3. 미얀마와의 변경무역

(1) 德宏자치주와 미얀마와의 변경무역

중국의 행정지역구분에 의하면 운남성과 티벳자치구가 미얀마와 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가 희소하고 교통도 불편하다. 그러나 운남성 서남부에있는 德宏자치주는 특수한 지리조건으로 인해서 옛날부터 중국과 미얀마를 연결하는 육상통로가 되고 있다. 1940년대에 유명해진 「난장루트」가 바로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 미얀마 변경무역의 90%이상이 이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미얀마의 변경무역이라함은 이 지역의 변경무역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德宏자치주의 畹町과 瑞麗는 미얀마와의 변경무역의 중심주이며 이 양쪽지역에서의 무역액은 전 운남성 변경무역 총액의 60%에 가깝다.

德宏자치주는 소수민족이 많은 지역이어서 옛날부터 미얀마의 변경지역과 혈연적·경제적 관계가 긴밀하였다. 「文革」때에는 국경선에 대한 통제가 심했기 때문에 양국 주민 사이의 경제적 왕래는 거의 멈춰버렸지만 1970년대 말이지나고 나서 서서히 재개되었다. 1980년대에 중국정부가 운남성 소수민족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무역의 발전에 유리한 몇가지 특혜정책을 실시한 결과 1984년

에 德宏자치주의 변경무역총액은 3,788만인민화폐원에 달하였다. 1985년 자치주정부가 변경무역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방침과 구체적 조치를 표명한 이래 변경무역의 규모는 급속히 확대되었다.(제4표)

(2) 미얀마와의 변경무역방식

德宏자치주에서 하고 있는 미얀마와의 변경무역방식은 구소련·북한 등 공유제가 주도하는 나라의 경우와 큰 차이가 있다. 德宏자치주의 지방정부는 현지의 실정에 근거하여 국영기업 뿐만아니라 집단소유제기업, 사영기업도 자주적으로 변경무역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결정하였고 또 양국 주민간의 물물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측 국경선에 「邊民互市」를 설치하였다. 인구가 1만명정도 밖에 안되는 국경도시 畹町에는 1992년 현재 모두 50개회사를 넘는 국영, 집단소유제, 사영의 무역회사가 정부에 등록되어 변경무역을 하고 있다. 국경도시 瑞麗에서는 매일 연 1만명을 넘는 사람들이 무역을 위해 국경을 왕래하고 있다.⁸⁾

德宏자치주의 변경무역에는 주의해야 할 현상이 있다. 구소련, 북한등과의 변경무역과는 달라서 중국측의 각 무역회사는 반드시 거래의 상대와 수출입액의 균형이 맞는 바터

주8) 「雲南邊境貿易全面發展」(「인민일보」 해외판 1992년2월11일) 1면.

무역을 하고 있지는 않다. 바꿔말하면 德宏 자치주의 변경 무역은 표준적인 바터무역은 아니고 수출과 수입을 각각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양국의 화폐가 양국의 변경지역에서 통용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양국화폐의 자연적인 환율이 작용한다.

제4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88년부터 1990년의 3년 사이에 중국측에는 연 7억 2,666만인민화폐원의 변경무역 흑자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바터무역의 원칙에서 말하면 이러한 거래의 흑자가 존재하게 되면 중국측에 있는 대부분의 작은 무역회사는 지속적인 경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중국측이 수출대금을 미얀마화폐로 하여 축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미얀마측으로부터 국제통화를 수취한다든가 미얀마에 투자하는 것도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최근 변경무역의 발전을 고려해 볼때 각 무역회사의 정당한 경영을 가정하면 거래의 흑자속에는 공식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래(더구나 화폐를 사용하는 거래)의 존재가 예상되고, 양국 변경주민간의 개인적 무역활동이 그 흑자를 해소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어째서 공식통계(무역회사가 행하는 무역뿐만 통계)의 무역흑자를 개인의 수입에 의하여 해소하지 않으면 안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것에

대한 정부당국의 해석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⁹⁾ 어쨌든 수입의 확대는 향후 미얀마와의 변경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3) 미얀마와의 변경무역의 무역재화

변경무역에서 중국측은 주로 천, 의복, 타올 등의 섬유제품과 고무신, 자동차, 소형기계, 회중전등, 전지 등의 일용공업제품을 수출하고 주로 농산품, 원재료 등을 수입하고 있다. 이를테면 1987~88년의 德宏자치주의 변경무역의 주요한 수입품목과 수량은 제5표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德宏자치주는 원래 공업생산이 그다지 발전하지 않은 지역이

주9) 미얀마와의 변경무역에 있어서 공식통계는 큰폭의 무역흑자로 나타나 있다. 필자는 그 공식 통계상의 무역흑자의 일부분은 개인에 의한 미얀마로부터의 마약 밀수입에 의해 해소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중국 운남성에 널리 퍼져있는 커다란 사회문제는 「마약의 밀매와 마약 중독자의 급증」이다. 특히 德宏자치주에 있어서는 사태는 좀더 심각하다. 중국 국내에서는 아편의 재배와 마약 생산에 대한 단속이 엄하기 때문에 마약제품은 주로 미얀마에서 운남성 德宏자치주를 경유하여 내지로 침투한다고 한다. 德宏자치주는 세계 마약의 주요산지인 「金三角」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개방정책하에서는 옛부터 유지해 온 편리한 왕래 조건을 이용하여 국내외 마약조직의 활동이 활발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또 변경무역의 결제방식이 수출입의 균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양국 화폐의 유통을 통하여 마약 밀수입의 결제도 좀 더 간단히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미얀마와의 변경무역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어떻게 마약유입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주목된다. 任維東 「昆明燒煙記」(「인민일보」1991년 10월 27일) 4면/任維東·劉遠達 「雲南禁毒成績顯著」(同紙 1991년 10월 23일) 4면을 참조

기 때문에 현재 수출재화의 대부분은 내지에서 조달하며 수입재화도 다수 내지로 조달되고 있다.

중계무역을 통하여 德宏자치주에 속해 있는 무역기업과 현지주민은 커다란 이익을 획득하였지만 수출에 의한 지방공업생산의 확대라는 제2차적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 따라서 변경무역을 위해 일용 공업제품의 수출생산기지를 德宏자치주에 설립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의도 있다.¹⁰⁾

(4) 미얀마와의 변경무역의 근황

최근에는 인접하고 있는 미얀마 북부지방 뿐만 아니라 다른지역과 주변국가의 주민도 이 루트를 통하여 중국과 경제무역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운남성정부도 최근 「打開南門走向亞太」(나라의 남쪽문을 개방하여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진출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변경무역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그 때문에 변경무역의 교통망 정비, 세관, 검역소등의 증설과 같은 구체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¹¹⁾

주10) 潘丹柯 「論雲南邊境貿易的加工和工業發展戰略的轉變」(「운남민족학원학보」1990년 2기)

주11) 「운남변경무역……」

제 4 표 중국과 미얀마의 변경무역

(단위 : 만, 인민화폐원)¹⁾

|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
| 總 額 ²⁾ | | 14,278 | 22,078 | 46,221 | 86,099 | 116,962 | 102,165 | 100,552 |
| (輸出) | | 6,819 | 10,375 | 22,599 | 48,590 | 75,879 | 64,477 | |
| (輸入) | | 7,459 | 11,703 | 23,622 | 37,509 | 41,083 | 37,688 | |
| 德宏自治州 | 3,788 | 10,900 | 19,600 | 39,000 | 780,000 | 96,500 | 100,000 | |

(출처) 1987년까지의 총액은 운남성통계국편 「운남통계년감 1991」, 북경, 중국통계출판사, 1991년 그 이후의 총액은 제2표와 같음 德宏자치주의 통계는 운남성경제위원회 「德宏的邊境貿易在改革中發展」(「중국경제체제개혁」1991년1기)

주1) 총액의 단위는 US달러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변경무역은 US달러의 국제가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최근 안민화폐원의 US달러에 대한 환율이 폭락했기 때문에 US달러에 대한 통계는 1US달러당 3.20(85년), 3.72(86년), 3.72(87년), 3.72(88년), 4.72(89년), 5.22(90년), 5.41(91년) 인민화폐원이다.

2) 1987년까지의 총액에는 라오스와의 변경무역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 규모는 적다. 제9표를 참조.

제 5 표 德宏自治州 변경무역의 주요한 수입품목

| | 品 目 | | 1987 | 1988(11月까지) |
|---|---------------------|--|-------|-------------|
| 목 | 재 (m ²) | | 2,560 | 6,636 |
| | 콩 (t) | | 79 | 1,830 |
| 콩 | 깃 목 (t) | | 7,130 | 24,090 |
| 옥 | 수 수 (t) | | 180 | 1,000 |
| 차 | 잎 사 귀 (t) | | 5,330 | 5,590 |
| 건 | 어 (t) | | 0 | 4,440 |
| 마 | 른 새 우 (t) | | 3,130 | 2,600 |
| 등 | 나 무 덩 굴 (t) | | 2,200 | 2,950 |
| 피 | 혁 (万枚) | | 23 | 80 |

(출처) 潘丹柯 「論雲南邊境貿易的加工和工業發展戰略的轉變」(「雲南민족학원 학보」1990년 3기).

4. 다른 나라와의 변경무역

이상 3개국과의 변경무역에 비하여 다른 나라와의 변경무역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그다지 보도되고 있지 않다.

(1) 몽골과의 변경무역

중국과 몽골의 변경무역은 주로 내몽고자치구가 하고 있다. 내몽고자치구는 1985년부터 정식으로 몽골과의 변경무역을 시작하였다. 기본형태는 구소련과의 변경무역과 대체로 같지만 무역의 잠재력이 그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내몽고자치구의 일급인 에르크나우기(지명)소속의 무역회사가 몽골의 관련회사와의 사이에서 바터무역을 하고 있다. 내몽고자치구와 함께 신강위글자치구도 소량의 무역을 하고 있다. 수출입액은 균형을 맞춰(제 6표) 중국측은 섬유제품, 일용 공업제품, 농·공업제품 등을 수출하고, 몽골측에서 중고타이어, 철부산물, 목재등을 수입하고 있다. 그외 「邊民互市」등의 형태로 주민 개인차원의 무역도 행해지고 있다.

제 6 표 중국과 몽골의 변경무역

(단위 : 만, 스위스프랑)

|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
| 內家古自治區 | 63 | 244 | 375 | 1,975 | 1,664 | 2,656 | 2,928 |
| (輸出) | 32 | 122 | 228 | 1,022 | 801 | 1,047 | 1,351 |
| (輸入) | 31 | 122 | 147 | 953 | 863 | 1,609 | 1,577 |
| 신강위글자치구 | | | | | 40 | | |

(출처) 제2표와 같음

주) 신강위글자치구는 1989년까지 몽골과 무역이 없었다. 1990년과 1991년의 무역량은 적으며 또 구소련과의 무역통계에 포함된다.

(2) 파키스탄과의 변경무역

신강위글자치구와 파키스탄 사이에도 변경무역이 행해지고 있다. 중국과 파키스탄(카시미르)의 국경에 있는 훈치라프(지명)는 1980년대 초에 개발된 이래 중국과 남 아시아, 서 아시아의 나라들을 연결하는 지극히 중요한 「육지통상항」이 되어 신강위글자치구와 파키스탄의 변경무역 통상루트로 되었다. 중국측은 그 변경지역의 축산품을 수출하고 그 지역에 필요한 일용품을 수입하고 있다. 통계숫자에 다소 문제가 있어도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제7표)

제 7 표 중국과 파키스탄의 변경무역

(단위 : 만, 인민화폐원¹⁾)

|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²⁾ |
|------|------|------|------|------|-------|-------|------|--------------------|
| 總 額 | 143 | 79 | 237 | 853 | 1,036 | 1,146 | 820 | |
| (輸出) | | | | | 518 | 538 | 595 | |
| (輸入) | | | | | 518 | 608 | 225 | |

(출처) 제2표와 같음

주1) 공표숫자의 단위는 연도에 따라 인민화폐 원, 파키스탄 루삐, US달러등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연말 환율로 인민화폐 원으로 환산하였다.

2) 1991년의 무역량은 구소련과의 무역통계에 포함된다.

(3) 네팔과의 변경무역

티벳자치구 변경무역의 주요한 상대국은 네팔이다. 양국의 국경 가까이에서 네팔주민과 티벳주민이 물물교환을 한다.

「辺民互市」가 있으며 그외에 지방정부 소속의 무역회사가 네팔의 회사를 상대로 바터무역을 하고 있다. 중국측은 축산물, 경공업제품등을 수출하고 네팔측에서 섬유제품, 약품, 염료, 가전제품등을 수입하고 있다. 또 무역흑자의 일부분에 대하여는 네팔측에서 외화를 수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변경무역으로서는 특별한 예외이다.¹²⁾ 단지 그곳에서의 변경무역은 신강위글자치구와 파키스탄의 무역과 같이 규모가 아주 작다.(제8표)

그외 변경무역의 목적은 타 지방과는 달리 무역이윤, 지방 농·공업생산의 확대, 정부재정수입의 증가 따위보다도 오히려 현지 주민의 소비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에 있다.

제 8 표 중국과 네팔의 변경무역

(단위 : 만, 스위스프랑)

| | 1980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
| 總額 | 28 | 56 | 25 | 100 | | 3,500 | 6,000 | 5,900 | 7,000 | 4,100 | 4,708 | 3,710 |
| (輸出) | 12 | 26 | 6 | 21 | | | | | | 2,495 | | |
| (輸入) | 16 | 30 | 19 | 79 | | | | | | 1,605 | | |

(출처) 1990, 91년은 「中國對外經濟貿易年鑑」 편집위원회편 「중국 대외경제무역연감」 홍콩중국광고유한공사 1991, 92년판, 그 외에는 西藏자치구 통계국편 「西藏사회경제통계연감 1990」 북경통계 출판사 1990년.

주) 1990, 91년의 공표수자 단위는 US달러였지만 비교하기 위하여 매년 말환율로 인만화페 원으로 환산하였다. 참고 비율은 제4표 (주) 참조.

(4) 라오스와의 변경무역

주12) 최근엔 흑룡강성과 러시아와의 변경무역에 있어서도 단순한 바터 무역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외화에 의한 결제의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나 중국 지방정부와 변경무역 기업에게는 외화의 준비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주로 상대방부터 일방적으로 수출대금을 국제 통화로 수취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실정에서 보면 변경무역의 주요한 흐름은 향후에도 역시 바터무역일 것이다.

라오스와의 변경무역은 운남성과 하고 있다. 무역형태와 개시한 시기는 미얀마의 무역과 대체로 같다고 생각된다. 중국측은 시멘트, 차, 엔진, 일용 공업제품을 수출하고, 라오스측에서 농산물과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다. 제9표에서 볼 수 있듯이 양국간의 변경무역 규모는 크지 않다.

제 9 표 중국과 라오스의 변경무역

(단위 : 만, 스위스프랑)

| | 1988 | 1989 | 1990 | 1991 |
|-------|-------|-------|-------|-------|
| 總 額 | 1,901 | 3,214 | 3,654 | 2,835 |
| (輸 出) | 1,012 | 1,723 | 2,297 | |
| (輸 入) | 889 | 1,491 | 1,357 | |

(5) 베트남과의 변경무역

현재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도 변경무역이 행해지고 있다. 그것은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었던 때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운남성과 廣西壯族자치구가 베트남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교통, 변경지역의 인구밀도, 교류역사 등의 조건에서 보면 그곳의 변경무역에는 향후 크게 발전할 잠재력이 존재한다. 1990년경까지 양국 변경무역의 주요한 방식은 「辺民互市」였다.

1983년에 廣西壯族자치구 大新縣 隴懷屯(지명)에서 최초로 「辺民互市」가 설립되어 양국간 민간차원의 경제교류에

있어 새로운 시대를 맞이 하였다. 1989년에 이르면 廣西壯族자치구에만 20개 이상의 고정적인 「辺民互市」가 설립되고 국경선 양측의 주민은 전통 혹은 습관에 근거하여 매월 몇차례 모여 물품을 교환 또는 판매한다. 「辺民互市」는 양국의 화폐가 통용되며 자연적인 환율도 존재한다. 1988년 경에는 중국 인민화폐 1원과 베트남 화폐 300동이 교환 되었지만 1991년에는 교환비율이 1,300동까지 올랐다고 한다. 지금 베트남에서는 중국 인민화폐 원이 US달러 다음으로 가장 가치있는 외화라고 보여지고 있다.¹³⁾

중국에서 수출품으로서는 약품, 소형기계, 섬유제품과 전차등 여러가지 공업제품이 많고, 베트남에서의 수입품은 광석, 농산물등이 있다. 그외에 대만과 홍콩의 제품이 베트남을 거쳐 개인에 의해 중국에 넘겨지는 경우도 있다. 이미 수많은 양국의 주민이 이러한 무역에 의해서 부유하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새로운 국가관계가 시작되어 지방차원에서 쌍방의 경제교류를 높이는 정치적 환경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辺民互市」같은 개인차원의 무역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기업간의 경제교류도 활발해져서 기업차원의 무역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베트남에서도 경제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지방의 자주권이 어느정도 확대되어 지방정부도 중국과 지방차원의 경제교류를 개시하였다. 이를테면 1992년에 이르러

주13) 葛象賢·吳東峰 「中越변경무역 견문」(「瞭望」1991년 19기)

베트남의 쿠안녕성에서는 26개의 기업이 이미 중국의 70개 기업과 무역관계를 확립하였고 省상업국 산하에 국경무역 위원회를 설립하여 수출입품의 감독과 무역관계의 촉진을 꾀하고 있다.¹⁴⁾

1991년에는 최초로 중국과 베트남사이에 「辺民互市」와 같은 개인차원의 무역을 초월한 변경무역(정부의 허가를 받은 무역기업에 의한 바터무역)이 행해져 중국측의 수출액이 735만 US달러(3,776만 인민화폐 원)에 달하였다.¹⁵⁾

수출입 균형을 가정하면 그것은 같은 해 변경무역액이 대략 8,000만 인민화폐 원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최근엔 무역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의 베트남 투자도 목표로 하고 있다.¹⁶⁾ 향후 베트남의 경제개혁의 가속화에 동반하여 양국의 변경무역은 대폭 확대되리라고 예상된다.

주14) 동남아시아 조사회 「동남아시아 요람 1992」 1992년 베트남 부분.

주15) 이것은 〈중국대외경제 무역연감〉편집위원회편 「중국 대외경제 무역연감 1992/93」홍콩 중국광고유한공사 1992년에서의 공식발표이지만 그 통계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羅映雪 「中越邊境貿易持續熱絡」(「경제도보」 홍콩 제2307호 1993년 2월)에 의하면 1991년 廣西壯族자치구와 베트남과의 변경무역총액은 이미 22억 인민화폐 원 이상이 되어 기업차원의 무역이 70%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 숫자와 공식통계와의 차이가 큰 것과 운남성의 공식통계가 없다는 점에서 실제의 베트남과의 무역규모는 공식통계 숫자보다도 크다고 보여진다. 같은 레포트의 숫자는 현지 지방정부의 책임자와의 인터뷰에 의한 것이니까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향후 수년간에 중국에 있어서 변경무역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것은 베트남과의 무역일 것이다.

주16) 상세한 것은 同上 레포트를 참조

5. 중국 변경무역의 규모

이상에서 소개하였듯이 중국 각 변경지역의 변경무역은 무역형태가 다양할뿐만 아니라 같은 재화의 경우에도 지역 및 무역을 하는 주체에 따라 가격수준이 다양하다. 무역가격의 결정방식과 계산단위는 동일하지가 않다. 따라서 전국적인 변경무역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통계자료가 불완전한 것 외에도 지방정부의 무역통계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¹⁷⁾

그밖에 다른 화폐단위(주로 인민화폐 원과 스위스 프랑)를 어떻게 집계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이미 서술하였듯이 중국의 변경무역에 있어서 스위스 프랑은 단지 인위적으로 선별된 표시수단이며 실제의 국제가치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직접 인민화폐 원과 스위스 프랑을 환율로 연결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다만 실제로는 스위스 프랑과 인민화폐 원에 의한 교역을 지방정부의 통계에서 US달러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본래의 화폐단위로 되돌리는 것은 가능

주17) 변경무역은 그 관리권이 지방정부에 있으며 또 국가의 무역계획에 의한 외화 상품등의 경제바란스와 그다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변경무역의 통계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그만큼 중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그것에 관하여 지방정부에서 자발적인 보고에만 의존하며 통계숫자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를테면 통계방식의 표준화 등)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재 상태이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중앙정부에 보고된 지방정부의 변경무역 통계의 신뢰성은 오로지 그 구체적 통계를 담당하는 직원의 개인적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

하며 또한 필요하다).

바터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수출재와 수입재의 교환 능력이기 때문에 무역기업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해년도의 국내가치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입한 재화가 그 때문에 수출한 재화보다 국내시장에서 비싸게 팔 수 없는 한 변경 무역을 하는 인센티브는 없다. 따라서 변경무역의 규모는 당해년도의 국내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구소련, 북한, 몽골과의 변경무역이 1980년대 초기에 재 개(또는 개시)되었을 때 국가간 협정무역에 의한 가격수준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또 그때는 인민화폐 원의 공식 환율이 스위스 프랑에 대하여 비싸게 평가되고 있었기 때문에 각 변경무역회사는 그것에 따라서 최초의 무역가격을 설정하였고 무역재를 선택하였던 것이다.¹⁸⁾

구소련, 북한, 몽골과의 변경무역의 역사와 실정(재화의 교환비율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것 등)을 고려하면 스위스 프랑 표시의 무역액을 다음과 같이 인민화폐 원으로 환산하는 일이 1차 접근으로서 타당할 것이다. 즉 1982년 당시의 인민화폐 원과 스위스 프랑의 공식환율을 기본으로 하여 매년 중국 국내의 물가지수를 기록한 것을 환산계수(환율의 샵도우 프라이즈)로 하는 것이다.

현재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과의 변경무역에서 인민화폐가 주요한 계산단위가 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무역규
주18) 필자의 조사에 의한 것임.

모를 해당년도의 국내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방법을 토대로 하여 스위스 프랑 표시의 통계수자를 인민화폐 원으로 환산할 수 있다. 그 결과를 제 10표에 게재한다.

제 10 표 중국변경무역의 수출입 총액(당해년 가격)

(단위 : 만, 인민화폐원)

| 相對國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
| 북한 ¹⁾ | | | | | 16,023 | 24,020 | 41,752 | 27,944 | 26,341 |
| 구 소련 | 1,797 | 4,451 | 8,053 | 8,024 | 16,563 | 55,108 | 161,077 | 201,025 | 304,850 |
| 몽 골 | | | 68 | 279 | 460 | 2,870 | 2,849 | 4,643 | 5,267 |
| 파키스탄 ²⁾ | | 143 | 79 | 237 | 853 | 1,036 | 1,146 | 820 | |
| 네 팔 | 100 | | 3,500 | 6,000 | 5,900 | 7,000 | 4,100 | 4,708 | 3,710 |
| 미얀마 | | 3,788 | 14,278 | 22,078 | 46,221 | 86,099 | 116,962 | 102,165 | 108,552 |
| 라오스 ³⁾ | | | | | | 1,901 | 3,214 | 3,654 | 2,835 |
| 베트남 ⁴⁾ | | | | | | | | | 8,000 |
| 계 | | | | | 86,020 | 178,034 | 331,100 | 344,959 | 459,555 |

(출처) 필자가 작성

주) 개인차원의 무역은 제외됨.

스위스 프랑을 인민화폐 원으로 환산할 때 국내물가지수는 국가통계국편 「중국통계연감 1991」 북경 중국통계 출판사 1991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 1982년을 100으로 하면 101.5(83년), 104.3(84년), 113.5(85년), 120.3(86년), 129.1(87년), 153.0(88년), 180.2(89년), 184.0(90년), 189.7(91년)이다. 1982년의 환율은 0.95인민화폐 원=1스위스 프랑

- 1) 북한과의 변경무역에 대하여는 1986년까지는 통계수자가 불완전하다.
- 2) 1991년의 파키스탄과의 무역량을 구소련과의 무역통계에 포함된다.
- 3) 1987년까지의 라오스와의 변경무역은 미얀마와의 무역통계에 포함된다.
- 4) 1990년까지는 베트남과의 기업차원의 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

V. 변경무역에 대한 평가

현재 중국의 변경무역은 변경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하 필자에 의한 현 단계에서의 변경무역의 평가를 정리하려 한다.

1. 유리한 조건, 외화의 절약

우선 변경무역을 통하여 변경지역은 국내시장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교환비율, 수송의 편리함, 시기 등)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생산재와 소비재를 입수할 수가 있다. 그것은 통상적인 의미로 무역으로부터의 이익이다. 통상적으로 외화를 가지고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재화를 얻기 위하여 지방정부와 기업은 변경무역에 특히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또 변경무역은 희소한 외화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무척 바라는 것이다.

2. 농·공업생산 유발 효과의 증대

다음으로 변경무역에서의 수출수요는 그 지역 기업의 생산에 새로운 유효수요의 「판로」를 제공한다. 다만 이제까지 대부분의 변경지역의 공업생산 기반이 약했던 점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타지역의 생산기업이 변경무역에서 발생하는 수출수요의 많은 부분을 흡수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개방정책하에서 중국의 연해지역은 공업제품

의 품질, 가격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변경무역이 기본적으로는 중계무역의 성질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주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변경지역의 제품은 수송비용이 낮다고 하는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변경지역의 경제발전에 동반하여 변경무역에서의 수출수요에 의한 농·공업 생산유발 효과가 더욱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3. 중계무역에 의한 무역이윤의 획득

세계로 내지를 위한 중계무역에 의해서 변경지역은 귀중한 무역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이미 서술하였듯이 변경무역의 업무는 변경지역의 특정기업에 한정되어 있는 특별한 권리가기 때문에 내지의 무역기업은 그 분야에 직접 참여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 이윤은 어떤 의미에서 독점이윤과 유사하다. 만일 변경무역을 省의 일급 기업만이 하게 된다면 그 이윤은 省 재정수입의 일부분으로서 전체 省차원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변경시나 현이 받는 혜택은 사소하다. 그러나 변경시, 현이 독자적으로 변경무역을 하게 되면 그 규모는 작을지도 모르지만 그 대신에 무역이윤은 전부 변경시, 현의 경제건설에 활용할 수가 있다. 그것은 원래 공업생산의 기반이 약하고 발전을 위한 자금부족에 고심하고 있던 변경지역의 지방정부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를테면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소속 변경무역회사의

연간 무역이윤(그 대부분은 내지와외의 중계무역에 의한 것임)은 1,000만 인민화폐 원을 초과한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총인구가 200만명 정도인 지역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는 자금이다. 중국에 있어서 변경무역이 행해지고 있는 省(자치구)은 전부 8개이지만 실제로는 省(자치구) 소속의 무역회사는 적고 변경무역의 대부분은 省(자치구)이하의 행정지역인 변경주, 시, 현 등에 소속하고 있는 국영 무역회사(개별적인 경우는 집단소유제 기업과 사영 기업)가 행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이윤은 그 변경지역 소속의 일부로서 절대액상으론 그다지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지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는 중요한 자금원이 되고 있다.

4. 제3차산업 발전의 촉진

네째로 외국과의 변경무역에 의한 인적, 물적교류는 그 지역의 제3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이를테면 廣西壯族 자치구의 변경마을인 東興에서는 베트남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에는 거의 모든 주민이 내지로 소개되어 마을은 황폐하게 되었다. 1989년경부터 양국의 주민간에 변경무역이 활발해져 최근엔 매달 연 1만명을 넘는 베트남 주민이 東興을 방문하였고 마찬가지로 매달 연 1,000명을 넘는 중국주민이 동흥을 경유하여 베트남으로 가고 있다. 10년전에는 1채밖에 없었던 여관도 지금은 100채를 넘고 있지만 그것도 부족하다고 한다. 동흥과 내지를 연결하는 버스는 과거에는 하루에 두 세번정도 경유하던 것이 지금은 하루

에 수십번 경유하게 되었다.¹⁾ 변경무역 활동에 의해 유발된 현지 서비스업의 발전은 고용을 확대하여 현지주민의 소득증가와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각 변경지역의 지방정부에 있어서 변경무역은 이미 지역의 경제발전을 꾀하는 중요한 수단(개별지역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

5. 높은 효율성

중국의 변경무역에 있어서 또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그것의 효율성에 관한 것이다. 변경무역의 특징에서 보면 변경무역방식은 적어도 이제까지의 국가간 협정무역방식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변경무역의 중요한 상대국인 구소련, 북한, 몽골, 베트남 등의 계획경제국 간에는 옛부터 양국간의 국가간 협정무역이 계속되고 있다. 그들 나라와의 국가간 협정무역은 국가간의 무역에 국제통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바터무역이다.(다만 구소련 정부는 1990년 12월 8일에 1991년부터 일부 연해무역, 변경무역, 생산협약조약등을 제외한 국가간의 바터무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국제통화에 의해 결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무역방식의 한가지 특징은 무역에 대한 국가독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선 국가차원의 무역대표단 사이에서 무역재의 종류, 가격, 수량, 수송방식과 시기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약을 체결한 후 각 전문분야의 국가무역회사가

주1) 曹象賢·吳東峰 前掲論文

각각 계약을 실행한다. 각 전문분야의 무역회사의 경영은 직접 국가재정 예산과 결부된다. 그 무역활동은 협정무역의 연간 계획에 따라 결손이 나와도 국가가 통일적으로 부담한다. 또하나의 특징은 독특한 결제방식이다. 양국은 상대국의 중앙은행에 서로 행정무역 결제구좌를 설립하여 바터무역의 실적액을 무이자로 예금하고 최후에는 서로 동일액을 소거한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방식 자체는 사실상 무역회사의 자주권을 인정한 것이며 완전한 독립채산제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간 협정무역에 있어서는 옛부터 가격의 계산단위를 스위스 프랑으로 해왔지만 최근 스위스 프랑에 대한 인민화폐 원의 환율이 대폭적으로 하락하였다. 따라서 만일 이 행정무역의 기본방식을 유지하면서 각 전문분야의 무역회사에 어느정도의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려 한다면 그것은 무역회사의 수출 의욕을 촉진시켜 자국의 무역흑자를 확대시키는 경향을 강하게 한다. 국가간 협정무역은 바터방식이고 게다가 흑자분은 무이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국에 무이자 차관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세번째의 특징은 국가간 협정무역방식이 계획경제와 계획가격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무역협정이 체결된 후 각 전문분야의 무역회사는 지정된 생산기업에서 국내의 생산계획에 근거하여 생산한 재화를 계획가격으로 매입하여 지정된 기간에 수출한다. 수입도 동일하다. 따라서 이 무역방식하에서는 무역회사가 국내의 교역상대를 선택하여 수출

비용의 절감과 무역이윤의 증가를 꾀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것들이 무역효율의 저하를 초래하고 결국엔 국가의 무역이익의 감소 또는 손실을 가져오게 한다. 중국과 북한과의 협정무역은 그 한가지 예이다. 중국은 북한과의 국가간 협정무역을 통하여 석유, 코크스용 석탄, 철도차량, 목화등을 수출하고 무연탄, 철강재, 화학비료, 명태 등을 수입하고 있지만 그것은 각 전문분야의 무역회사가 국가로부터 수출입 명령에 가까운 계획을 받아서 각각 실행하게 되어 있다. 이를테면 機械進出口公司는 철도차량을 수출하며 化工進出口公司는 화학비료를 수입한다. 최근 중국의 무역경영 청부제하에서 각 전문분야의 무역회사에게는 각각 국가재정 이윤 상납의 규칙 또는 국가보조금 급부액이 결정되어 있다.

협정무역에 있어서 재화의 가격단위는 스위스 프랑이므로 환율에 의해 인민화폐 원으로 환산한 가격이 계획가격에 의한 수출(수입)재의 매입가격(판매가격)을 초과하는(하회하는) 부분은 그 재화의 수출(수입)을 행하는 무역회사의 이윤이 되고 그 반대의 경우는 결손이 된다. 그러나 행정무역에 있어서 재화의 가격은 수년전에 결정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고정된 것이지만 최근 스위스 프랑에 대한 인민화폐 원의 환율이 대폭적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수출은 이윤이 되고 수입은 결손이 된다. 따라서 수출계획을 실행하는 회사는 그 수출재의 가격에 상당하는 재화가 중국에서 수입되었는지 어떤지를 묻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출을 하지만 수입계획을 실행해야 할 회사는 그 임

무의 완수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면에서 보면 북한측의 공급능력의 부족도 수입계획이 원만히 완수되지 않는 하나의 원인이다. 결국 무역경영 청부제하에서 각 전문분야 무역회사의 이윤 최대화를 위한 행동은 오히려 무역의 대폭적인 흑자를 가져오는 국가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구소련과의 국가간 협정무역에도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변경무역에는 그러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변경무역회사는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하는 종합성 회사이기 때문에 같은 바터무역이라도 수출을 하지 않으면 수입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정무역과는 달리 수입을 촉진하는 경제적 유인이 강하다. 바꿔말하면 변경무역하에서는 무역흑자를 확대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소련과의 변경무역에 커다란 흑자가 존재한 것은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다. 앞절(주4)를 참조)

또 변경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스위스 프랑과 같은 명목상의 가격단위가 아닌 수출입재의 직접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스위스 프랑의 실제 가치의 변동은 변경무역의 경영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그 대신에 다른 화폐 단위를 사용하여도 결과는 같다. 다음으로 변경무역은 국내의 계획가격과 재화의 매입, 판매루트 등에 대하여 구속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경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으며 이

윤 최대화를 통하여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다. 같은 바터무역 방식이어도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면 변경무역 방식은 적어도 국가간 협정무역 방식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6. 가격의 왜곡 문제

계획경제 국가에 있어서는 가격이 실제의 사회적 비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소위 가격의 왜곡)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통상 대외무역에서는 무역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을 수 있으며 무역수준이 사회후생의 최적수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과 무역에 의해 국가가 오히려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변경무역의 경우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도 약간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전문적 분석에 양도하기로 한다.

7. 향후의 역할

최근 중국의 개방정책에 의해 연해지역은 커다란 경제발전을 실현하였고, 그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은 대폭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내륙지역은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이 늦어져 지역간 격차는 더욱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그 배경에는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제도적 원인이 있다. 따라서 연해지역에서 가장 먼 변경지역이 특수한 입지조건과 변경무역을 이용하여 지역발전을 꾀하는 것은 지역간의 격차를 축소하고 발전의 불균형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구소련 지역은 중국에게 지금까지 변경무역을 위한 가장 중요한 상대였다. 소련의 붕괴와 정치, 경제적인 변동은 향후 중국의 변경무역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 변경지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는 향후에도 변경무역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 생각된다.

저자 : 韓 洪 錫(慶應義塾大學 경제학 박사과정)